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538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다희, 이춘원, 전성재, 이지원

피 고 B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호준, 손경한

판 결 선 고 2023. 7. 1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444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때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에 해당한다. 이때 은행은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과 달리,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수익자에게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점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행보증서 및 수정이행보증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계약관계에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그 계약관계와 독립되어 그 계약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원고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피고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이행보증서 및 수정이행보증서에는 수익자인 원고의 청구가 있는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거나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오히려 이 사건 이행보증서 및 수정이행보증서에는 보증의뢰인인 참가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행보증서에 첨부된 보통약관 제2조는 수익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들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원인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서,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서 및 수정이행보증서가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독립적 은행보증과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